

[민원신청내용]

민원제목	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, 활용실적(건설신기술) 평가기준에 관한 문의
민원내용보기	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67호 -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.  [별표1]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에서 1. 분야별 평가기준의 라.항 (3)활용실적의 내용 중 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시 인정범위에 관해 2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 첫번째,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(예 : A, B 2개사), A사가 신기술 활용시(신기술사용 협약서에는 등록 권리자인 A, B사 모두 날인), B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신기술 활용실적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.  두번째, 제 3자인 C사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했을 경우, A사 또는 B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신기술 활용실적의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.
첨부파일	첨부파일 없음

[처리기관정보]

처리기관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		
담당자(연락처)	문성배 (044-201-3567)		
접수일	2018-06-27 13:39:19	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1806-381064
답변일	2018-07-03 18:07:09		
답변내용	<p>1. 안녕하십니까?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.</p> <p>2. 질의내용</p> <p>○ 신기술을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중 한 업체가 기술개발투자실적의 활용실적을 가진 경우 타 업체도 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,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업체가 활용실적을 가진 경우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</p> <p>3. 답변내용</p> <p>○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[별표1] 1. 분야별 평가기준 라.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(3)활용실적에 따라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/p> <p>○ 따라서,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한 용역업자가 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 귀 질의사항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직접 설계에 활용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<u>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활용실적으로 인정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</u></p> <p>4. 동 민원회신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기술기준과 담당자(문성배 044-201-356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. 끝.</p>		
답변첨부파일	첨부파일이 없습니다.		